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63
--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06년 월 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이유

-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인에 대한 예우풍토를 조성 · 확산하여 기업인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애로 해소활동을 강화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기업인 예우 확대와 기업사랑 · 농촌사랑 운동의 지원 근거를 정함. (안 제4조제1항 · 제3항, 제13조제1항)
- 기업인 자긍심 고취를 위해 “기업인의 날” 지정 ·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. (안 제4조제2항)
- 기업의 애로해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“충청북도기업애로 지원협의회” 지원기능을 강화하고,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설치함(안 제15조제4항 · 제5항, 제16조)
- 기업애로지원센터 내에 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과 자문위원회의 운영근거를 정함(안 제17조 내지 제19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”이라 함은 기업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고충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.

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선정 이달의 충북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

제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“제①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기업인이 존경받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매년 10월 네번째 화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.
- ③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한 “기업사랑 · 농촌사랑운동”을 적극 지원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기업사랑 등 관련단체의 사업비 일부”를 “기업사랑 · 농촌사랑운동본부 등 관련단체의 사업비 일부”로 한다.

제15조제4항 중 “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를 선임하고 수시로 개최한다”를 “위원장은 지역경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안건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”로 한다.

제1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도 실·국장, 도 의회의원, 시·군의 부시장·부군수
2. 기업지원 유관기관·단체장

제16조를 제20조로 하며, 제16조내지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기업애로지원센터 설치·운영) ①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센터는 센터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, 센터장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

1.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관련업무 지원
2. 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 운영 및 지원

제17조(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의 운영) ①센터내에 기업관련 건의사항 파악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(이하 “옴부즈만”이라 한다)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·군별 1명씩 시장·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.

1. 기업 경영 또는 기업관련 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
2.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경상계열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
3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
4. 국가·지방공무원으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
5. 경제계·학계·언론계·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

③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④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

1.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조사 및 시정권고 · 의견표명
2. 기업경영상 불합리한 규제 및 전의사항 파악 등

제18조(기업애로지원자문위원회의 구성 · 운영)

① 옴부즈만의 공평한 직무수행과 전문 ·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기업인, 각계 전문가, 중소기업 관련 전문인사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.

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, 회의는 센터장 및 옴부즈만의 신청에 의해 소집한다.

제19조(활동지원) 옴부즈만에게는 조사에 필요한 활동비(여비 등)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~3.(생략)</p> <p>4.(신설)</p> <p>제4조(예우 및 지원대상)①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이나 기업인(이하 “우수기업인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~4.(생략)</p> <p>5. 기타 신기술개발, 고용증대, 품질경영 향상, 노사협력 및 대규모 투자 등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</p> <p>6. (신설)</p> <p>② 제①항 규정에 의하여 수여받은 상장, 인증 및 지정서는 우수기업인 인증서로 갈음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</p> <p>-----.</p> <p>1.~3.(현행과 같음)</p> <p>4. “<u>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</u>”이라 함은 기업관련 애로 및 견의사항을 파악하고 고충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<u>도지사</u>”라 한다)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.</p> <p>제4조(예우 및 지원대상)①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.</p> <p>1.~4.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충북지방중소기업청 선정</u> 이달의 <u>충북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</u></p> <p>6.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② <u>기업인이 존경받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1월 네 번째 화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③ (신설)</p>	<p>③ <u>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한 “기업사랑 · 농촌사랑운동”을 적극 지원한다.</u></p>
<p>④ (신설)</p>	<p>④ <u>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여받은 상장, 인증 및 지정서는 우수기업인 인증서로 갈음한다.</u></p>
<p>제13조 ① <u>도지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사랑 등 관련단체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3조 ①----- ----- -----<u>기업사랑 · 농촌사랑 운동본부 등 관련 단체의 사업비 일부</u>.</p>
<p>②(생략)</p>	<p>②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5조 ① ~ ③(생략)</p>	<p>제15조 ① ~ ③(현행과 같음)</p>
<p>④ <u>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를 선임하고 수시로 개최한다.</u></p>	<p>④ <u>위원장은 지역경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안건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u></p>
<p>1. <u>도의 기업지원관련 실 · 과장, 시 · 군의 국 · 실 · 과장</u> 2. <u>기업지원 유관기관단체 임 · 직원</u></p>	<p>1. <u>도 실 · 국장, 도 의회의원, 시 · 군의 부시장 · 부군수</u> 2. <u>기업지원 유관기관 · 단체장</u></p>
<p>3. (생략)</p>	<p>3.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⑤(생략)</p> <p>제16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⑤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<u>기업애로지원센터 설치·운영</u>)①</p> <p>기업애로해소 및 규제완화 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</p> <p>②센터는 센터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, 센터장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③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업애로해소 및 규제완화 관련업무 지원 2. 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 운영 및 지원
제17조(신설)	<p>제17조(<u>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의 운영</u>)</p> <p>①센터내에 기업관련 견의사항 파악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(이하 “옴부즈만”이라 한다)을 운영할 수 있다.</p>

현 行	개 정 안
	<p>.</p> <p>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자종에서 시·군별 1명씩 시장·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업 경영 또는 기업관련 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2.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경상계열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3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. 국가·지방공무원으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5. 경제계·학계·언론계·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<p>③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④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조사 및 시정권고·의견표명 2. 기업경영상 불합리한 규제 및 건의사항 파악 등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신설)	<p>제18조(기업애로지원자문위원회의 구성 · 운영)</p> <p>① 옴부즈만의 공평한 직무수행과 전문 ·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</p>
	<p>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기업인, 각계 전문가, 중소기업 관련 전문인사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.</p> <p>③ 자문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④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, 회의는 센터장 및 옴부즈만의 신청에 의해 소집한다</p>
제19조(신설)	<p>제19조(활동지원) 옴부즈만에게는 조사에 필요한 활동비(여비) 등 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20조(현행 제16조와 같음)</p>
제20조(신설)	

관 계 법 령 발 췌

□ 중소기업기본법

제1조 (목적)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조장하고 나아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정부등의 책무)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□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

제48조 (육성계획의 수립)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47조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전부를 육성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40조 제2항 제8호에서 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·도의 추진체계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

2.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
 3.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
 4. 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
 5.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
 6. 중소기업자의 기업의욕고취에 관한 사항
- ③ 시 · 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시 ·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1996.2.9>

□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의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 한다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“생략”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3. 농림 ·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
4.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· 관리에 관한 사무
5. “생략”

제15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,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